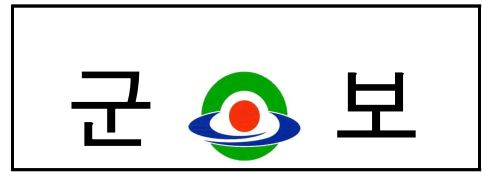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488호 2023. 11. 23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3-1464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(전화 650-6065)

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3일

예 천 군 수

1. 조례명 :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(안)

2. 폐지이유

-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, 제9조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및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상환이행 촉구 및 채권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 : 예천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

4. 폐지조례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사회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youngha87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사회복지과

3) 팩스 : 054-650-620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사회복지과(전화: 054-650-695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

☐ 조례명 :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
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